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태호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20319
----------	-------

발의연월일 : 2026. 7. 30.

발 의 자 : 정태호 · 김주영 · 맹성규
이학영 · 진성준 · 이연희
박민규 · 이주희 · 이수진
이광재 · 김영환 의원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차별적 처우 금지를 위하여 개별 법률상의 규율을 두고 있으나, 보편적 차원에서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원칙을 체계적으로 실현하기 위한 근거는 명확하지 않아 노동시장에서의 임금격차가 지속되고 있으며 이러한 격차로 인해 사회적 불평등이 심화되고 있음.

그런데 동일가치노동은 직무수행에 요구되는 기술, 노력, 책임, 작업 조건 등을 고려하였을 때 본질적으로 같은 가치의 노동으로서 동일임금이 지급되어야 함. 이 원칙이 산업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종합적인 정책 기반이 우선 마련될 필요가 있음.

이에 현행법에 동일가치노동의 정의를 명시하고, 파견근로에 대한 정보접근권을 강화하여 차별적 처우를 신속히 발견하고 시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파견근로자 보호를 위해서도 통일된 절차 및 기준을 확립하려는 것임(안 제21조 등).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정태호의원이 대표발의한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0314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 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동일가치노동”이란 직무수행에서 요구되는 기술, 노력, 책임, 작업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동일하거나 본질적으로 같은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노동을 말한다.

제21조제1항 중 “업무를 수행하는”을 “업무에 종사하거나 동일가치노동을 수행하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전단 중 “그 밖의”를 “그 밖의 자료요청 및”으로, “제9조부터 제15조까지 및 제16조제2호·제3호를”을 “제8조의2, 제9조부터 제15조까지, 제16조제2호·제3호를”로 한다.

제46조제5항에 제2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2의2. 제21조에 따라 준용되는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자료제공의 요청에 따르지 아니한 자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 7. (생략) <u><신설></u>	제2조(정의) ----- -----. 1. ~ 7. (현행과 같음) 8. “ <u>동일가치노동</u> ”이란 직무수행에서 요구되는 기술, 노력, 책임, 작업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동일하거나 본질적으로 같은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노동을 말한다.
제21조(차별적 처우의 금지 및 시정 등) ① 파견사업주와 사용사업주는 파견근로자라는 이유로 사용사업주의 사업 내의 같은 종류의 업무 또는 유사한 <u>업무를 수행하는</u> 근로자에 대하여 파견근로자에게 차별적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생략) ③ 제2항에 따른 시정신청, <u>그 밖의</u> 시정절차 등에 관하여는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u>제9조</u> 부	제21조(차별적 처우의 금지 및 시정 등) ① ----- ----- ----- ----- <u>업무에 종사하거나 동일가치노동을 수행하는</u> ----- ----- -----. ② (현행과 같음) ③ ----- <u>그 밖의</u> 자료요청 및----- ----- -----

터 제15조까지 및 제16조제2호 · 제3호를 준용한다. 이 경우 “기간제근로자 또는 단시간근 로자”는 “파견근로자”로, “사용 자”는 “파견사업주 또는 사용 사업주”로 본다. ④ (생략) 제46조(과태료) ① ~ ④ (생 략)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 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2. (생략) <u><신설></u> 3. ~ 7. (생략) ⑥ (생략)	---제8조의2, 제9조부터 제15조 까지, 제16조제2호·제3호를--- -----. -----. -----. -----. -----. ④ (현행과 같음) 제46조(과태료)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 -----. 1. 2. (현행과 같음) 2의2. 제21조에 따라 준용되는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 호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 2제2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 유 없이 자료제공의 요청에 따르지 아니한 자 3. ~ 7. (현행과 같음) ⑥ (현행과 같음)
---	---